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741

발의연월일: 2024. 11. 20.

발 의 자:천준호·박성준·박상혁

추미애 • 이강일 • 한민수

박홍배 · 강선우 · 정을호

박희승 • 박홍근 • 황정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부업자에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이내로 제한 중이나,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는 제한이 없음. 또한 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채권이 양수·양도되는 경우의 계약서류 보관의무에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자기자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부계약을 체결할 경우 재정적 안 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상대적으로 낮은 자본금으로 운영되는 지자 체 대부업체의 운영상 안정성이 오히려 더 불안한 실정임

한편, 대부채권이 양수·양도된 경우 채무자가 수사 또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계약서류가 보관되어 있지 않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거나, 반대로 채무를 모두 변제한 이후 채무자가 요청해도 계약서류를

반환해주지 않아 대부업체가 채무자의 개인정보 등을 악용할 우려가 잔존하는 문제점도 제기됨

이에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총자산한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채권이 양수·양도되는 경우에도 채무자 등이 계약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의무를 명시하며, 채무가 변제된 뒤에는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 일체의 원본 서류를 의무적으로 반환하게 하여 채무자의 개인정보등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6조제5항 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 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양수한 자가 해당 채권을 양수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계약서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⑧ 대부업자 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자는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 원본의 반 화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을 반화하여야 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를 "시·도지사등에 등록한 대부업자"로 한다.

제21조제2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6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관계서류 원본을 반화하지 아니한 자 별표 1 제7호 중 "제6조제5항"을 "제6조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 중 "제6조제6항"을 "제6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표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6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관계서류 원본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총자산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대부업자가 제3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3조의2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	제6조(대부계약의 체결 등) ①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
	자가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을
	양수한 자가 해당 채권을 양수
	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
	년이 되는 날까지 계약서와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
	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u>⑥</u> (생 략)	<u>⑦</u> (현행 제6항과 같음)
<u><신 설></u>	⑧ 대부업자 또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수한 자는 대부
	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
	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
	인이 채무를 변제하고 계약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관계서류 원본의 반환을 요구
	하는 경우에는 그 원본을 반환
	<u>하여야 한다.</u>
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금융위	제7조의3(총자산한도) ① <u>시·도</u>
원회에 등록한 대부업자는 총	지사등에 등록한 대부업자
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이하 "총자산한도"라 한 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 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제21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 5. (생 략)

<신 설>

6. ~ 10. (생략)

③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6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계약관계서류 원본을 반환
하지 아니한 자
6.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